

심사결과보고

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	비고
4574	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경제복지위원회

의안
번호

4574

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7. 27.

경제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7월 9일,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7월 9일, 의장으로부터 회부
- 다. 상정 및 심사 일자: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.의결 (2026.7.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유등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. 12. 31.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.
- 이에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: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
- 위탁현황

법인명	대표	위탁기간	규모(연면적)	주요시설
(사복)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김정석	(최초위탁) 2017.1.1.~2021.12.31. (재계약) 2022.1.1.~2026.12.31.	지상1~3층 (1,746.32㎡)	경로식당, 물리치료실, 프로그램실, 강당 등

- 위탁기간: 2027. 1. 1. ~ 2031. 12. 31. / 5년
- 위탁범위: 유등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

- 위탁방법: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
- 소요예산: 797,383천원(국, 시비)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	산출내역	소요예산	비 고
총 계			797,383	
일반운영비		◦ 수용비, 공공요금, 시설장비유지비, 출장여비 등	78,000	시비70 구비30
인 건 비	인 건 비	◦ 기본급, 가족수당, 4대보험료, 퇴직금 등 (산출기초: 4,321천원×13명×12개월)	674,183	
	종사자특별수당	◦ 월정액 100천원×13명×12개월	15,600	시비50 구비50
	정액급식비	◦ 월정액 50천원×13명×12개월	7,800	
	종사자건강검진비	◦ 200천원×9명 ^{※수년도 출생자}	1,800	
프로그램운영비		◦ 1개소당 20,000천원	20,000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류옥화)

- 본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유등노인복지관이 2026. 12. 31. 자로 만료 예정됨
-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경쟁 절차를 통해 공신력, 사업 수행능력, 재정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함.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「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(운영),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위

탁 대상사무), 제6조(의회동의), 제7조(위탁 동의안)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생 략

5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6. 소 수 의 견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

유등노인복지관

민간위탁 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457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: 2026. 7. 9.
제출자: 대전광역시 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우리 구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유등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('26. 12. 31.)이 도래함에 따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(재위탁)을 추진하고자 하며,
- 나. 이에 따라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)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

나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31. 12. 31. (*5년)

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제2항

다.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(운영)

-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), 제6조(의회동의), 제7조(위탁 동의안)

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· 내용

-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
-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개발 · 운영 등 노인복지관 사업 수행
-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적 · 물적 자원 마련 및 관리 등 제반 사항
- 노인복지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
-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의무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시 설 명: 유등노인복지관
- 소 재 지: 서구 도솔로182 (도마동)
- 위탁현황

법인명	대표	위탁기간	비고 (최초위탁)
(사북)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김정석	(신 규)2017. 1. 1. ~ 2021. 12. 31. (재계약)2022. 1. 1. ~ 2026. 12. 31.	2017. 1. 1.

- 규 모: 지상1층 ~ 지상3층 / 부지 16,578.4㎡ , 연면적 1,746.32㎡

계(㎡)	사무실	식당	강당	화장실	물리치료실	건강교실	기타
1,746.32	96.6	204.67	317.14	150.45	44.55	73.91	859

- 인력현황: 13명 (시설장 포함)

계	관장	국장 (사회복지사)	사회복지사			사무원	물 리 치료사	영양사	조리원	관리원
			과장	선임	복지사					
13	1	1	2	1	3	1	1	1	1	1

바. 위탁방법

○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

- 별첨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 참고

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- 별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참고

아. 예산현황: 797,383천원 (2026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	산출내역	소요예산	비 고
총 계			797,383	
일반운영비		○ 수용비, 공공요금, 시설장비유지비, 출장여비 등	78,000	시비70, 구비30
인건비	인건비	○ 기본급, 가족수당, 4대보험료, 퇴직금 등 (산출기초: 4,321천원×13명×12개월)	674,183	
	종사자 특별수당	○ 월정액 100천원×13명×12개월	15,600	시비50, 구비50
	정액급식비	○ 월정액 50천원×13명×12개월	7,800	
	종사자 건강검진비	○ 200천원×9명 작수년도 출생자	1,800	
프로그램운영비		○ 1개소당 20,000천원	20,000	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 1부(별첨)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1부(별첨)

등록번호	노인장애인과 -27281
등록일자	2026. 7. 9.
결재일자	2026. 7. 9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노인서비스팀 장	노인장애인과장	주민복지국장	보구행정	구청장
					2026. 7. 9.
윤유진	전영미	나기일	안영욱	최동규	전문학
협 조 자					
	기획예산과장	이경			
	예산팀장	강재형	조직평가팀장	성지은	

구민 주권, 행복 도시 서구
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-

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
결재요지

- (위탁대상) 유등노인복지관
- (위탁기간) 5년 (2027. 1. 1. ~ 2031. 12. 31.)
- (위탁방법) 재위탁 (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)
- (추진절차)



주 민 복 지 국
노인장애인과/노인서비스팀
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-

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

- 유등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(2026.12.31.) 도래에 따라, 재위탁(공개모집)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.

1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(운영)
-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
-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

2 추진방향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위탁 기준, 절차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
-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재정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

3 위탁개요

- (위탁대상) 유등노인복지관

시설명	개 관	소재지	종사자	규모 (연면적)	주요시설
유등 노인복지관	2015. 2. 27.	도솔로 182 (도마동)	13명	지상1~3층 (1746.32㎡)	경로식당, 물리치료실, 프로그램실, 강당 등

- (위탁기간) 2027. 1. 1. ~ 2031. 12. 31./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
- (위탁범위) 유등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무 전반
- (위탁방법)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

4

세부추진계획

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	→	구의회 동의	→	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	→	위·수탁 협약 체결
'26. 7월 (방침 결재)		'26. 7월 (제297회 임시회)		'26. 11월 (공개모집: '26.9.~10.)		'26. 12월

①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

- (일 정) 2026. 7월 중 /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
- (안 건)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- (주요내용) 민간위탁 필요성, 위탁시설 개요,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

② 수탁법인 공개모집

- (공고기간) 2026. 9월 중 / **공고기간 20일(접수기간 5일 포함)**
 - ※ 접수결과 단독법인 접수 시 재공고 / 7일간
- (공고방법) 구 홈페이지 게시
- (공고내용) 신청자격, 신청조건, 위탁사무의 범위, 위탁기간 등
- (제출서류) 수탁운영신청서, 법인(단체) 현황, 사업계획서 등

③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/ 별도 계획수립

- (구성시기) 2026. 10월 중
- (구성인원) 9인 이내 / 위원장 1인 포함
- (위원자격)
 -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 - 단, 수탁자와 특수관계자(친·인척 등)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
- ※ **구청장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함**
- (소요예산) 심사위원 참석수당 700천원
 - ▶ 산출내역: 100,000원 × 7명 = 700,000원

4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

- (일 정) 2026. 11월 중
- (장 소) 서구청 3층 장태산실 (예정)
- (심사방법) 사업계획서 발표(PPT) ⇒ 질의응답 ⇒ 심의
 - 시설장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법인 대표 및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,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
 - 신청법인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
- (심의내용) 심사지표에 의거 신청법인의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재정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탁기관 선정
- (선정방법)
 - 최고,최저점수를 제외(다수일 경우 1개만 제외)한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,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함
 - 단독신청 시에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,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인 경우 선정제외 및 재공고
- (의 결)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5 심의결과 통지 및 공표

- 수탁기관 선정 후 區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
- (이의신청)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의신청(서면) , 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.통지

6 위수탁 협약 체결

- (일 정) 2026. 12월 중
- (주요내용) 위탁사무 및 기간, 종사자 관리, 자부담 사항, 지도감독 등

5

2026년 유등노인복지관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	산출내역	소요예산	비 고
총 계			797,383	
일반운영비		○ 수용비, 공공요금, 시설장비유지비, 출장여비 등	78,000	시비70 구비30
인 건 비	인건비	○ 기본급, 가족수당, 4대보험료, 퇴직금 등 (산출기초: 4,321천원×13명×12개월)	674,183	
	종사자특별수당	○ 월정액 100천원×13명×12개월	15,600	시비50 구비50
	정액급식비	○ 월정액 50천원×13명×12개월	7,800	
	종사자건강검진비	○ 200천원×9명 ^{작수년도} 출생자	1,800	
프로그램운영비		○ 1개소당 20,000천원	20,000	

6

향후계획

- 의회 동의안 제출: '26. 7. 9.
- 수탁자 모집 공고: '26. 9월 중
- 수탁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: '26. 11월 중
- 위·수탁 협약 체결: '26. 12월 중

- 붙임 1. 민간위탁 관련 법령 1부.
2. 민간위탁 동의안 1부. 끝.

참고자료

유등노인복지관 현황

- 위 탁 법 인: (사복)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(김정석)
- 현 위탁기간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 / ※ 최초위탁 2017. 1. 1.
- 건 물 규 모: 지상3층 / 연면적 1,746 m² / 사무실, 식당, 강당, 물리치료실 등
- 시설장(관장): 박명래 (男, 1964년생) / 2017. 1. 1. ~ 현재
- 종사자현황: 13명(정규직)

계	관장	국장 (사회복지사)	사회복지사			사무원	물 리 치 료 사	영양사	조리원	관리원
			과장	선임	복지사					
13	1	1	2	1	3	1	1	1	1	1

- 2026년 예산: 797,383천 원
- 법인전입금: 60,000천 원
- 주요사업 내역

사 업 명	내 용
사회교육사업	노래교실, 정보화교실, 영어, 일본어, 한글, 댄스교실 등 17과목 21반 / 485명 수강
건강증진사업	물리치료, 치매 예방 인지활동, 체력단련
무료급식지원사업	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, 도시락 제공 / 무료 110명, 유료 45명
정서생활지원사업	초기상담, 전문상담, 상담프로그램 등 운영
위기 및 독거노인지원	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통합돌봄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
지역자원개발 및 지역복지 연계사업	후원사업, 홍보사업, 일반자원봉사 등
사회참여지원사업	사랑나눔미 봉사단, 유등청춘봉사단, 치매지킴이 봉사단 등
기 타	동아리지원사업(탁구동호회, 바둑동호회) 등
노인일자리 지원사업 ▶ 전담인력: 6명 ▶ 일자리수: 공익 260명, 역량활용 220명 ▶ 주요사업: 10개사업/ 식사배달, 환경정비, 폐의약품 수거, 마을환경 개선, 공공시설지원등	노인맞춤 돌봄사업 ▶ 수행인력: 72명 (전담사회복지사6, 생활관리사66) ▶ 사업대상: 947명 ▶ 주요사업: 안부확인, 서비스연계, 생활교육, 퇴원환자서비스등 제공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5. 10. 2.] [법률 제20883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1. 8. 4.>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 1. 15.>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6. 3. 4.] [보건복지부령 제1159호, 2026. 3. 4., 타법개정]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<개정 2020. 1. 3.>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

[시행 2025. 4. 9.] [조례 제2198호, 2025. 4. 9., 일부개정]

- 제4조(운영)**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08.11.11, 2016.12.19., 2025. 4. 9.>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개정 2025. 4. 9.>
- ③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신설 2025.4.9.>

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. 1.] [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, 2023. 12. 28., 전부개정]

제4조(위탁 대상사무)

-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(그 장을 포함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

제6조(의회 동의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(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
 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
 3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
 4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 5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 6. 재난·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
 2.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
 3.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
 4.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

제7조(위탁 동의안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의 내용
4. 위탁시설의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위탁기간
6.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5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9.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(재계약인 경우에 한함)
10. 그 밖에 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

등록번호	노인장애인과-26319
등록일자	2026. 7. 3.
결재일자	2026. 7. 3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노인서비스팀장	노인장애인과장	주민복지국장
윤유진	전영미	나기일	안명옥
협조자			

구민 주권, 행복 도시 서구
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-

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



주 민 복 지 국
노인장애인과/노인서비스팀
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- 유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

- 유등노인복지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(2026.12.31.)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에 관한 검토 보고입니다.

1 관련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(운영)
-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위탁 적정성 검토)

2 민간위탁 개요

- (위탁기간) 2027. 1. 1. ~ 2031. 12. 31. / *5년
 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- (위탁사무) 유등노인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
- (시설현황)

시설명	개 관	소재지	종사자	규모 (연면적)	주요시설
유등 노인복지관	2015. 2. 27.	도솔로 182 (도마동)	13명	지상1~3층 (1746.32㎡)	경로식당, 물리치료 실, 프로그램실, 강당 등

- (위탁법인 현황)

법인명	대표	위탁기간	비고 (최초위탁)
(사북)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김정석	(신 규)2017. 1. 1. ~ 2021. 12. 31. (재계약)2022. 1. 1. ~ 2026. 12. 31.	2017. 1. 1.

- (수탁자선정) 공개모집 후,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·결정

3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

- (검토기준)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7개 항목
- (세부검토 내용)

검토기준	검토내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□ 검토의견 : 민간위탁이 타당함 ○ (직영 시 한계) 구 직접 수행(직영) 시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복지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, 총액 인건비제 및 정원 규제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 불가능함. ○ (위탁의 필요성) 노인복지법상 요구되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, 전문 치료사 등 필수 인력을 민간의 고용 구조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, 구청은 직접 운영보다 관리·감독에 집중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함.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□ 검토의견 : 적정 (법령 및 지자체 관리 감독으로 공공성 보안 가능) ○ (공공성 및 안정성 우려) 노인복지 서비스는 취약계층 돌봄과 직결된 필수의료·복지 재화로서 민간위탁 시 수익성 위주의 편향된 운영이나 저소득층 소외 등의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음. ○ (법령에 따른 보완 가능성) 노인복지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법적으로 '노인복지법'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, 민간이 임의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대상을 차별할 수 없음. 동법에 의거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, 이용자 인권 보호 조항 등이 강제되므로 제도적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됨. ○ (구청의 개입 및 통제 장치) 또한, 구청은 보조금 지급 및 위탁 계약을 매개로 강력한 개입 권한을 가짐. '노인복지법' 및 조례 등에 따라 구청에서 이용료를 직접 통제·승인하고, 재무회계 규칙 준수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음. 운영 부실이나 위법 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, 위탁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.

3. 경제적 효율성	□ 검토의견 : 적정 (예산 절감 및 자원 조달 효과 우수) ○ (비용 절감) 공무원 인건비 대비 민간 법인 직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. ○ (외부 자원 활용) 민간 위탁체(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등)가 보유한 자체 후원금 유치 능력,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, 비용 대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	□ 검토의견 : 매우 적정 (민간의 고도화된 전문성 도입 필요) ○ (노인 맞춤형 프로그램) 치매 예방, 고령자 맞춤형 평생교육, 사례관리 등 급변하는 노인 인구 특성에 맞춘 고도의 전문 프로그램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. ○ (전문적 인력 관리)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의 채용·교육·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.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□ 검토의견 : 적정 (정량·정성 평가 지표 수립 가능) ○ (지표 설정 용이) 이용자 수, 프로그램 만족도, 시설 가동률, 보건복지부 시설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정량적 지표와 지역 사회 기여도, 사례관리 성과 등 정성적 지표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는 분야임. ○ (성과 환류)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이를 재위탁 여부와 연계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상시 유도할 수 있음.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□ 검토의견 : 보통 (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제하에 적정) ○ (리스크 요인) 보조금 집행 부적정, 채용 관련 비리, 시설 내 노인 인권 침해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. ○ (통제 장치) 구의 정기적인 지도·감독과 시설운영위원회(주민, 이용자, 전문가 등) 운영 등을 통해 운영상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있음.

7.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	□ 검토의견 : 적정 (경쟁력 있는 수탁 후보군 풍부) ○ (공급 주체 충분) 관내·외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종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역량 있는 비영리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여 안정적 운영 주체를 확보할 수 있음. ○ (건전한 경쟁) 공개모집 방식을 채택할 경우, 우수한 기획력과 재정 건전성을 갖춘 법인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시장 여건상 위탁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4

검토결과

□ (종합의견) 적정

- 유등노인복지관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5 및 「대전광역시 서구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에 근거해 지자체 장이 설치·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(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)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- 유등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의 여가·평생교육·건강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임.
- 민간위탁 운영 시, 민간기관의 현장 경험과 유연한 운영방식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발적인 후원금 확보, 지역 연계 복지사업 추진, 행정조직의 확대 방지 등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지자체 관리·감독 및 평가 체계의 강화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면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.
- ☞ 유등노인복지관 향후 운영 방식에 관해 전문성, 운영의 안정성, 경제적 효율성 등 종합적 검토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.

-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위탁 동의안 제출 : '26. 7월
- 현 수탁기관 성과평가 : '26. 8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: '26. 9. ~ 10.
-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'26. 11월
- 위·수탁 협약체결 : '26. 12월

붙임 관련법령 및 조례 1부. 끝.

사회복지사업법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제4조(운영)**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5조(위탁 적정성 검토)**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3. 경제적 효율성
 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7. 그 밖에 공공·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